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소득세법」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현행화 하여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일부 소득을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
- 나.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이 공제되는 시설 중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재활훈련 시설의 범위를 해당법 체계에 맞게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다목 “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”를 “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8호 나목 중 “주간재활시설만”을 “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소득의 범위)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실제소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1. 근로소득 가~나. (생략) 다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제5조의2(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)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1. ~ 7. (생략) 8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(<u>주간재활시설</u>만 해당한다)	제5조(소득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가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<u>이상의 수당</u> 제5조의2(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(<u>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만</u> 해당한다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52